

나) 건축시설계획

구분	가구또는 확자구분	위 치	면적 (㎡)	건 축 시 설 계 획				
				건폐율 (%)	용적률 (%)	층수 (높이)	연면적 (㎡)	주된 용도
신설	택지	하왕십리동 999번지 일대	26,817	20.98%	216.41%	평균 15.96층 (8층~20층)	88,714	공동주택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	총세대수 : 568세대(100%) - 전용면적 36.15㎡ : 51세대(8.97% 임대주택) - 전용면적 45.21㎡ : 46세대(8.10% 임대주택) - 전용면적 59.98㎡ : 74세대(13.03%) - 전용면적 84.97㎡ : 317세대(55.81%) - 전용면적 114.98㎡ : 74세대(13.02%) - 전용면적 144.51㎡ : 6세대(1.07%)					
건축선에 관한 계획			관련법규에 의함					

5) 사업시행예정시기

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의 신청

6) 정비사업의 시행방법

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

7)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: 증)145세대
기존세대수 423세대 → 계획세대수 568세대

2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9항제2호에 관련된 사항(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사유)

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에 의한 자치구청장 권한 위임사항임.

3.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(☎ 3707-8496) 및 성동구청 주택과(☎ 2286-5591)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29호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23호(2000.2.9)로 구역 지정되고, 같은 고시 제2003-187호(2003.6.30) 등으로 구역 변경 지정된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07년 5월 17일

서울특별시장

1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 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적(m ²)	비 고
기 정	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	동대문구 용두동 51번지 일대	90,134.5	○ 기존 용두구역을 2개로 분할 ○ 구역계 변경 없는 면적 정정 : 증)2.1m ² (용두1구역) ○ 용두1구역은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
변 경	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	동대문구 용두동 51번지 일대	38,430.1	
	용두1도시환경정비구역	동대문구 용두동 26번지 일대	51,706.5	

2. 정비계획의 변경

가. 토지이용계획

1) 기정

구 분		지구명	면적(m)	비율(%)	비 고
용두구역	합 계		90,134.5	100	
	획 지 계 획	소 계	62,297.6	69	
		1	2,833.5	3	상업(상업) 업무, 근린
		2	2,729.9	3	상업(상업) 업무, 근린
		3	2,961.6	3	상업(상업) 업무, 근린
		4	3,273.2	4	상업(상업) 업무, 근린
		5	7,657.1	7	주거(주거) 근린
		6	1,619.6	2	주거(주거) 상업 업무, 근린
7	2,465.4	3	주거(주거) 상업 업무, 근린		
용두구역	획 지 계 획	8	3,357.7	4	상업(상업) 숙박, 업무, 근린
		9	2,307.1	3	업무(업무, 상업) 근린
		10	2,760.5	3	업무(업무, 상업) 근린
		11	2,879.6	3	업무(업무, 상업) 근린
		12	3,535.8	4	상업(업무, 상업) 근린
		13	2,414.4	3	상업(상업) 업무, 주거, 근린
		14	2,142.0	2	상업(상업) 업무, 주거, 근린
		15	1,831.0	2	주거(주거) 상업 업무, 근린
		16	2,542.2	3	주거(주거) 근린
		17	2,027.0	2	주거(주거) 근린
		18	2,283.8	3	업무(업무, 상업) 근린
		19	2,257.9	3	업무(업무, 상업) 근린
		20	2,222.7	2	상업(상업) 업무, 주거, 근린
		21	3,073.7	3	주거(주거) 업무, 상업, 근린
		22	1,518.2	2	상업(상업) 업무, 주거, 근린
	23	1,605.8	2	주거(주거) 업무, 상업, 근린	
	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27,836.9	31	
		도 로	24,101.5	27	도시계획시설
		공 원	3,151.5	3	공원지하부공용주차장설치 (A=2400㎡, 복합도시계획시설)
		공공공지	533.9	1	도시계획시설

2) 변경

(1) 용두구역 : 변경없음(지구외)

구 분	자구명	면적(m ²)	비율(%)	비 고
용두구역	합 계	38,430.1	100	
	획 지 계 획	소 계	26,880	70
		1	2,833.5	7 상업(상업) 업무, 근린
		2	2,729.9	7 상업(상업) 업무, 근린
		3	2,961.6	8 상업(상업) 업무, 근린
		4	3,273.2	9 상업(상업) 업무, 근린
		5	7,657.1	20 주거(주거) 근린
		6	1,619.6	4 주거(주거) 상업 업무, 근린
		7	2,465.4	6 주거(주거) 상업 업무, 근린
		8	3,357.7	9 상업(상업) 숙박 업무, 근린
	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11,532.1	30
		도 로	9,381.1	24 도시계획시설
		공 원	1,567.1	4 공원 지하부공용주차장 설치 (A=1,200m ² , 복합도시계획시설)
		공공공지	583.9	2 도시계획시설

(2) 용두1구역(지구내)

구 분	자구명	면적(m ²)	비율(%)	비 고
용두 1구역	합 계	51,706.5	100	
	획 지 계 획	소 계	34,782.9	67 (업무, 판매)
		1	2,019.6	4 (업무, 판매)
		2	2,546.3	5 (업무, 판매)
		3	3,009.3	6 (업무, 판매)
		4	1,300.5	3 (판매, 주거)
		5	24	준주거지역(판매, 주거)
				상업지역(업무, 판매)
		6	25	준주거지역(판매, 주거)
				상업지역(업무, 판매)
	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16,923.6	33
		도 로	15,354.8	30 도시계획시설
		공 원	1,568.8	3 공원 지하부 공용주차장 폐지 (A=1,200m ²)